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35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이춘석 · 박민규 · 문진석
문정복 · 윤준병 · 양문석
임미애 · 이정문 · 한민수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 25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4급”을 “5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년으로”를 “3년으로”로,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5급----- -----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u>4년으로</u> 하되, <u>연임할 수 없다.</u> ③·④ (생략)	② ----- ----- <u>3년으로</u> -----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③·④ (현행과 같음)
--	---